

# 교내홍보게시물관리지침

시행 : 2018. 5. 1.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내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캠퍼스의 환경을 정리·개선하고,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용어 정의)
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홍보게시물 : 교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게시하는 모든 홍보 매체(현수막, 인쇄물 등)를 말한다.
2. 인쇄물 : 그림이나 문자를 포함한 단색 또는 다색으로 인쇄된 포스터 및 필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표현물(소책자, 팜플렛, 도서 포함)을 말한다.
3. 관리자 : 세부 운영을 담당하는 총무관리처 관리팀 및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, 해당 게시판 및 게시 장소의 관리부서를 말한다.
4. 지정 게시판 : 학교에서 건물内外에 공식적으로 설치한 게시판을 말한다.
5. 임시 게시판 : 학교에서 임시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건물内外에 설치한 게시판을 말한다.

## 제3조(홍보게시물의 구분)

교내에 부착 또는 게시되는 모든 홍보물(인쇄물, 현수막 등)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학생 게시물 :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총학생회, 단과대학 학생회, 동아리 등 교내 등록된 공식적인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
2. 일반 게시물 : 학생 게시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게시물

## 제4조(운영 및 관리)

1. 학생 게시물의 운영 및 관리는 미래혁신원장이 총괄하며,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 단, 각 단과대학 옥내외부 게시판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장이 총괄하며,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관장한다.
2. 일반 게시물의 운영 및 관리는 총무관리처장이 총괄하며,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관리처 관리팀에서 관장한다.

## 제5조(홍보게시물 부착)

1. 교내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옥내 및 옥외 게시판에 한하여

부착하여야 한다. 단 상업적인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다.

2. 하나의 게시판에 중복하여 게시할 수 없다.
3. 홍보게시물을 교내 도로 및 건물 내 바닥, 벽면, 전신주, 가로등, 나무에 게시할 수 없다.

## 제6조(홍보게시물의 규격 및 디자인)

홍보게시물의 규격과 디자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규격 : 인쇄물 및 필기 제작물: 전지, 2·4·8·16절지로 제작하여야 하며, 가능한 4절지 이내로 한다.
2. 디자인 :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하되, 사용되는 이미지는 우리학교와

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한다.(예. 60주년 엠블럼, 학교 건물, 조형물 등 기타)

#### 제7조(게시 승인)

- 교내에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 부서에서 게시 승인을 받고, 게시물에 날인을 받아 지정 게시판에만 게시한다.
- 정문에서 본관 구간은 원칙적으로 홍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. 단, 학교의 주요 행사(입학식, 학위수여식 등)는 예외로 한다.
- 관리자가 홍보게시물의 부착을 승인할 때에는 홍보물의 규격을 확인하고, 게시기간과 게시장소를 확인한 후 홍보물에 날인하여야 하며, 승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(게시 기간)

- 행사가 수반되는 홍보게시물은 행사 1주일 전부터 종료 후 1일 이내로 게시한다.
- 행사목적 이외의 홍보게시물은 1주일 이내로 게시한다.

#### 제9조(철거)

- 홍보게시물은 원칙적으로 게시 기간 후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.
- 게시 기간이 지난 홍보게시물이 자진 철거되지 않을 때는 관리 부서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-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(불법현수막, 포스터 등)은 관리부서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관리자의 임무)

- 해당 게시판 관리부서는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-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  -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
  - 지정 또는 임시게시판 이외의 게시물
  -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물
  - 게시물의 내용 및 규격 등이 학교의 면학분위기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지침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